

1.약관명: 대출거래약정서(주택도시기금대출 : 가계용)

2.시행일: 2025.03.24

3.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: 적용

주택도시기금대출 약관 일부개정 전후 대비표

개정 전				개정 후				비 고
제1조 거래조건				제1조 거래조건				비담목대출 금 리 적용방식 신 설
대출과목		대출금액	금 원	대출과목		대출금액	금 원	
대출개시일	20 년 월 일	대출만료일	20 년 월 일	대출개시일	20 년 월 일	대출만료일	20 년 월 일	
대출이자율	변 동 금 리	5년단위	<신 설>	변 동 금 리	5년단위	연 % 적용되며, 이후 국토교통부의 고시 기준금리가 변동 될 경우 대출 개시일로부터 매5년마다 변동됩니다.		
		기타	(생 략)			기타	(현행과 같음)	
	신 생 아 특 례 버 탕 목 전 세 자 금 대 출	(생 략)		신 생 아 특 례 버 탕 목 전 세 자 금 대 출	(현행과 같음)			
		(생 략)			(현행과 같음)			
		(생 략)			(현행과 같음)			
고 정 금 리	연 % <신 설>			고 정 금 리	연 % * 대출기간 10년 및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선택 시 고정금리로 적용			
<신 설>		<신 설>		10년 고정 후 변동금리		연 % * 10년 고정금리 적용 종료 후 국토교통부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변경		
* 구입자금(공유형모기지 제외)의 경우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.5% 이하인 경우 연 1.5%를 적용하기로 합니다. (단, 주택보유 이력이 없는 신혼가구인 경우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.2% 이하인 경우 연 1.2% 적용) * 전세자금의 경우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.0% 이하인 경우 연 1.0%를 적용하기로 합니다.				* _____ -				

※ 대출실행 후 3개월동안 이자 선납이 제한됩니다.

<신 설>

구 분	구입자금	전세자금
기준금리 적용기준	(생 략)	(생 략)

제10조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등

① ~ ⑦ (생 략)

<신 설>

※

※

※ 고정금리 선택 시 0.3%p,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선택 시 0.2%p, 5년주기 변동금리 선택 시 0.1%p 가산금리가 만기까지 적용됩니다.

※ 금리적용 방식에 따른 가산금리가 부과된 경우, 고정금리 적용 종료 후 변동금리 전환 시에도 가산금리 부과는 유지됩니다.

구 분	구입자금	전세자금
기준금리 적용기준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
제10조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등

① ~ ⑦ (현행과 같음)

⑧ 위험건축물 이주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.

1. 본 대출 취급이후 퇴거주택에 대한 추가 전입이 있는 경우(단, 퇴거주택 소유자에 한함)
2. 퇴거 주택에 대한 정비사업이 완료된 경우(단, 퇴거주택 소유자에 한함)
3. 본 대출 취급 이후 다른 주택을 구입한 경우

금리적용 방식에 따른 가산금리 부과 및 변동금리 전환시 가산금리 부과 유지